화 성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02호

2026년 11월 2일 (월)

차 례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3584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3588호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화성시 공고 제2026-3589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화성시 공고 제2026-3592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44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박○신)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46호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공고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11호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1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및 본부과 공시송달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26-8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화성 봉담 대로2-10호선(구. 대로2-6호선)]

화성시 고시 제2026-8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화성봉담2 국도43호선 우회도로(대로2-10, 3-18호선)]

화성시 고시 제2026-85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회 람									

발행 : 화 성 시 편집 : 언론담당관

화성시 공고 제2026 - 3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주소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년 11 월 2 일

화 성 시 장

1. **처분내용:**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당 사 자:** 공고대상 참조
3. **처분원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활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
5. **공고기간:** 2026. 11. 2. ~ 2026. 11. 16.(14일간)
6. **공고장소:**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공고대상(건축허가 취소대상 5건)**

구분	허가번호	당사자		대지위치	청문일정(일시)
		성명	주소		
1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1227	㈜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8로 14, 더원프라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새솔동 100-1	2026년 11월 17일 14시 30분
2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1228	주식회사 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95, 301호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559-1 외 5필지	2026년 11월 17일 15시
3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1313	주식회사 제******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15-1, 해니비지니스센터 413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송동 717-4	2026년 11월 17일 16시
4	2023-건축허가과-신축허가-50	㈜에**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에이-1동, 에이-2-2동 4층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장덕리 730-17 외 2필지	2026년 11월 19일 14시
5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1066	㈜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11번길 36, 102호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지화리 683-3	2026년 11월 19일 14시 30분

8. 청문실시

<table>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 colspan="2">화성시</td><td>부서명</td><td>건축과</td><td>담당자</td><td>황 규 민</td></tr>
<tr><td>주소</td><td colspan="4">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본관 4층 지역조정센터</td><td>전화번호
(팩스)</td><td>031-5189-2691
031-5189-1554</td></tr>
<tr><td>일시</td><td colspan="4">7. 공고대상(청문일정) 참고</td><td>장소</td><td>본관 4층
지역조정센터</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5">화성시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td></tr>
<tr><td>성명</td><td colspan="5">김 종 민</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성시 공고 제2026-3588호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2. 내 용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황계동 134번지 일원
 다. 규 모 : 고지배수로 신설(BOX1.5*1.5, L=400m), 교량 재가설(1개소), 노후저수지(1개소), 세천(L=517m), 우수관로(L=378m) 정비제방 정비(L=380m, H=2.1m)
 라. 총공사비 : 20,962백만원(예정)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시공단계 36개월]
 바. 용역금액 : 4,08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4.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6. 11. 2. (월) ~ 2026. 11. 9. (월) 16:00까지(8일간)
 나. 방 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붙임 의견서 작성)
 다.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건설과 하천시설팀
 라. 문 의 처 : 화성시 안전건설실 건설과(☎031-5189-2457)
 ※ 전자메일 : yullee00@korea.kr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 용역명 :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등급	분야	투입기간																		투입기간(개월)	환산비	환산인·월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7			
상주기술인	책임	고급	토목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37.0	1.000	37.0
	분야	중급	토목(안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37.0	0.931	34.4
		중급	토목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6.0	0.931	33.5
		중급	토목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3		32.3	0.931	30.1
	소 계																								135.0
기술지원기술인			수자원개발																						13.2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품질																						
			토목시공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배치총원 : 148.2

1 페이지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서

의 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00.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화성시장 귀하

화성시 공고 제2026 - 3589호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제4조 규정에 따라『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합니다.

2026. 11. 2.

화 성 시 장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 [붙임1] 참조
※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 의견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6:00 까지

○ 의견서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건설과 하천시설팀

○ 의견서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 ⇒ 의견서 양식 : [붙임2]
- 담당자 : 화성시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이중열 주무관(☎031-5189-2457)
- 이메일 : yullee00@korea.kr

※ 의견수렴은 [붙임2]의 의견서 서식대로 작성(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되어야 하고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로 접수된 건 만 인정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의견 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며, 이메일 송부 후 반드시 화성시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

2026. 10.

화성시

(건설과)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해당분야 경력 11,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5, 특정경력 1 교육훈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 면접 : 책임(4), 분야(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8) ·용역수행성과(2)
3. 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5) ·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 활용실적 (3)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인 (2)
※ 가점 및 감점	±5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1)	등 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1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	해당분야경력	13	절대평가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5	
		특정경력	1	
		교육훈련	1	
	면접(발표) (6)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0점】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벌 점		5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절대평가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감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2. 분야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
여
기
술
인</td><td>(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td><td>60
[21]</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td></tr>
<tr><td></td><td>(가) 해당분야
경력</td><td>11</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 수</td><td>11</td><td>9.9</td><td>8.8</td><td>7.7</td><td>6.6</td></tr>
</table>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td></tr>
<tr><td></td><td>(나) 직무분야
실적</td><td>9</td><td>-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실 적 (단위 : 년)</td></tr>
<tr><td>특급</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고급이하</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able>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다) 교육훈련</td><td>1</td><td>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실 적 (단위 : 년)</td></tr>
<tr><td>특급</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고급이하</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 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실 적 (단위 : 년)</td></tr>
<tr><td>특급</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고급이하</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9.0</td><td>8.1</td><td>7.2</td><td>6.3</td><td>5.4</td></tr>
</table>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해당 사업별 기술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시 제시.</td></tr>
<tr><td></td><td>(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td><td>[23]</td><td>-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발주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조정 가능</td></tr>
<tr><td></td><td>(가) 해당분야
경력</td><td>13</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나) 직무분야
실적</td><td>9</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경 력(단위 : 월)</td></tr>
<tr><td>1,000억원이상</td><td>84이상</td><td>84미만
60이상</td><td>60미만
46이상</td><td>46미만
42이상</td><td>42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72이상</td><td>72미만
60이상</td><td>60미만
48이상</td><td>48미만
36이상</td><td>36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
40이상</td><td>40미만
30이상</td><td>30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td>48이상</td><td>48미만
40이상</td><td>40미만
32이상</td><td>32미만
24이상</td><td>24미만</td></tr>
<tr><td>100억원미만</td><td>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
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td></tr>
<tr><td>점 수</td><td>13</td><td>11.7</td><td>10.4</td><td>9.1</td><td>7.8</td></tr>
</table>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실 적 (단위 : 년)</td></tr>
<tr><td>특급</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고급</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중급이하</td><td>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 수</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able>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실 적 (단위 : 년)</td></tr>
<tr><td rowspan="2">특급</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r><td rowspan="2">고급</td><td colspan="2">4이상</td><td colspan="2">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 colspan="2">3.0</td><td colspan="2">2.7</td><td>2.4</td><td>2.1</td></tr>
<tr><td rowspan="2">중급이하</td><td colspan="3">3이상</td><td colspan="2">3미만</td></tr>
<tr><td colspan="3">3.0</td><td colspan="2">2.7</td></tr>
</table>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9점)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다)교육훈련</td><td>1</td><td>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실 적 (단위 : 년)</td></tr>
<tr><td>특급</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고급</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중급이하</td><td>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 수</td><td>9.0</td><td>8.1</td><td>7.2</td><td>6.3</td><td>5.4</td></tr>
</tabl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배치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td></tr>
<tr><td></td><td>(3) 기술지원 기술인</td><td>[10]</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td></tr>
<tr><td></td><td>(가) 등급</td><td>3</td><td>-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2">등 급 (점수)</td></tr>
<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td>특급기술인</td><td>고급기술인 이하</td></tr>
<tr><td>3</td><td>2</td></tr>
<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 이하</td></tr>
<tr><td>3</td><td>2</td></tr>
</table></td></tr>
<tr><td></td><td>(나) 해당분야 경력</td><td>5</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 수</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td></tr>
<tr><td></td><td>(다) 특정경력</td><td>1</td><td>- 토목시공 기술지원기술인이 하천분야 상주기술인 경력 1년이상자 배치 시</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라) 교육훈련</td><td>1</td><td>-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기술자격 평가분야는 집행계획 공고시 명시)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td></tr>
<tr><td></td><td>(4) 면접(발표)</td><td>6</td><td>-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면접 평가 대상 : 책임(고급)1인, 분야토목(중급)1인 총 2인에 한하여 평가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용 역 비</th></tr>
<tr><th>20억원 미만</th><th>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h><th>30억원 이상</th></tr>
<tr><td>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2점</td><td>3점</td><td>4점</td></tr>
<tr><td>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1점</td><td>1.5점</td><td>2점</td></tr>
</table>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평가는 필요시 과업수행계획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td></tr>
<tr><td>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td><td>(1) 유사용역
수행실적</td><td>10
[8]</td><td>-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td></tr>
<tr><td>3,000억원이상</td><td>120이상</td><td>120미만
110이상</td><td>110이상
100미만</td><td>100이상
90이상</td><td>90미만
45이상</td></tr>
<tr><td>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td><td>100이상</td><td>100미만
90이상</td><td>90미만
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35이상</td></tr>
<tr><td>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
40이상</td><td>40미만
30이상</td><td>30미만
15이상</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
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0이상</td></tr>
<tr><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7이상</td></tr>
<tr><td>100억원미만</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점 수</td><td>8</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
- 실적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 인정여부는 발주하는 용역 공종의 특성에 맞게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발주예정용역</th></tr>
<tr><th>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th><th>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th><th>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th></tr>
<tr><td rowspan="5">보
유
실
적</td><td>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td><td>70%</td><td>70%</td><td>100%</td></tr>
<tr><td>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td><td>-</td><td>100%</td><td>70%</td></tr>
<tr><td>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td><td>100%</td><td>-</td><td>70%</td></tr>
<tr><td>설계실적</td><td>70%</td><td>-</td><td>49%
(70%×70%)</td></tr>
<tr><td>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td><td>-</td><td>70%</td><td>49%
(70%×70%)</td></tr>
</table>
</td></tr>
<tr><td></td><td>(2) 용역
수행성과</td><td>[2]</td><td>
- 화성시에서 수행한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table>
<tr><th>용역평가
결과</th><th>95점 이상</th><th>95점 미만
92점 이상</th><th>92점 미만
89점 이상</th><th>89점 미만
86점 이상</th><th>86점 미만</th></tr>
<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
</table>
* 용역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하천분야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용역평가점수} = \frac{\sum_{i=1}^{n}(\text{해당용역 실적금액}_i \times \text{해당용역 평가결과 점수}_i)}{\sum_{i=1}^{n}\text{해당용역실적금액}_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table>
<tr><th>참여사
(A컨소시엄)</th><th>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th><th>용역평가결과
점수</th><th>용역평가점수</th></tr>
<tr><td>a사(60%)</td><td></td><td></td><td>(1.4점)</td></tr>
<tr><td>①용역</td><td>10</td><td>80</td><td rowspan="3">86.11점</td></tr>
<tr><td>②용역</td><td>15</td><td>85</td></tr>
<tr><td>③용역</td><td>20</td><td>90</td></tr>
<tr><td>b사(30%)</td><td></td><td></td><td>(1.8점)</td></tr>
<tr><td>①용역</td><td>15</td><td>92</td><td>92점</td></tr>
<tr><td>c사(10%)
실적없음</td><td>-</td><td>-</td><td>(1.6점)
-</td></tr>
</table>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td><td></td><td>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td></tr>
<tr><td>다.

신
용
도</td><td>(1)영업(업무) 정지</td><td>15
[7]</td><td>-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td></tr>
<tr><td></td><td>(2) 벌점</td><td>[5]</td><td>-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td></tr>
<tr><td></td><td>(3)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td></tr>
<tr><td>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td><td>(1) 개발·활용 실적</td><td>10
[3]</td><td>-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td><td></td><td>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
<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2.0점/건당</td></tr>
<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
<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
</tabl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6">가 중 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h>0.5</th></tr>
<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
0.3이상</td></tr>
<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r>
</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
<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
</table>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td></tr>
<tr><td></td><td>(2) 투자실적</td><td>[7]</td><td>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
<tr><td>구 분</td><td>1.5%이상</td><td>1.50%미만
1.25%이상</td><td>1.25%미만
1.00%이상</td><td>1.00%미만
0.75%이상</td><td>0.75%미만
0.50%이상</td><td>0.5%미만</td></tr>
<tr><td>점 수</td><td>7.0</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
</table>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td></tr>
<tr><td>마.

교</td><td>

(1)건설사업관리</td><td>5

[3]</td><td>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체
빈
도</td><td>용역사업자</td><td></td><td>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
<tr><td>교체빈도율
(%)</td><td>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이상</td></tr>
<tr><td>점 수</td><td>3.0</td><td>2.5</td><td>2.0</td><td>1.0</td><td>0</td></tr>
</table></td></tr>
<tr><td></td><td>(2)참여기술인</td><td>[2]</td><td>-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td></tr>
</table>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세부평가방법</th></tr>
<tr><td>가점</td><td>공 사 비 절 감 기 여 기 술 인</td><td>-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table>
<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5</td></tr>
<tr><td>절감금액</td><td>10억원 이상</td><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tr>
<tr><td>절감비율</td><td>1.0% 이상</td><td>1.0% 미만
0.5% 이상</td><td>0.5% 미만
0.1% 이상</td></tr>
</table>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하천분야)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td></tr>
<tr><td></td><td>건 설 기 술 인 신 규 고 용</td><td>○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td></tr>
</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위 내용에 대한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부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화성시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별도 제시된 예정착수일로 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화성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화성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화성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화성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성시는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

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적 또는 자격분야와 수정된 배점표가 반영된 세부평가기준을 입찰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화성시는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 시공 ·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표] 실적인정 범위

1) 토목분야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도로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하천	**하천, 댐, 저수지 등**
상·하수도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철도(토목)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등

※ 복합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하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하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

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 · 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기여율(%)	절감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화성시장 귀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수렴 건 명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화성시는「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업체명), 주소, 연락처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문서 보존기간 후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황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화성시 공고 제2026-35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1. 2. ~ 2026. 11. 16.
3.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1. 17. 이후
4. 공시송달 대상 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이해관계 내 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반송사유
등록번호	차명	성명				
66나5883	A8 LWB 4.0 TFSI quattro	(주)수***	저당	남*택	경기도 고양시 ***	기타
서울34너6127	그랜저XG	최*우	저당	박*준	경기도 구리시 ***	기타
80다8887	포터 II (PORTER II)	윤*필	저당	양*기	경기도 고양시 ***	기타
52루6050	그랜저(GRANDEUR)	최*주	저당	이*호	경기도 파주시 ***	기타
21도6255	K7	오*필,김*정	저당	이*수	경기도 안산시 ***	주소불명

5. 공시송달 내용: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고, 진행중일 경우 추진사항을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 차령초과 예고통지 담당자(031-5189-33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화성시장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신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 위	용 도	구 조	면 적 (㎡)	시정요구기한
박○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2*, 1007동 20*호(성포동, 주공아파트)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162-*	증축	창고	컨테이너	18	2026. 11. 18.

5. 공고기간 : 2026. 11. 2. ~ 2026. 11 .16.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홍현아	전화번호	031-5189-7719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 - 346호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공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1. 2. ~ 2026. 11. 16.
2. 발견장소: 병점동1-5번지, 병점동846번지, 진안동 874-5번지
3. 발견일시(계고장 부착): 2026. 10. 19.(2026. 10. 19. ~ 2026. 10. 30.)
4. 보관일(수거일): 2026. 10. 30.
5. 보관대상: 무단방치자전거 4대
6. 처분: 공고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주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7. 보관자전거: [붙임] 참조
8. 무단방치 자전거 반환 청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점구 안전건설과 (☎031-5189-4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관리 대장

연번	사 진	색 상 (문 구)	실시 일자	수거 장소	보관 장소	관리 번호
2026 -110		검은색	**10/30**	병점동1-5	**병점동 546-2**	2026-110
2026 -111		검은색	**상동**	병점동1-5	**상동**	2026-111
2026 -112		흰색	**상동**	병점동846	**상동**	2026-112
2026 -113		흰색	**상동**	진안동 874-5	**상동**	2026-113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5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동 탄 구 청 장

1. 제 목 :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국세기본법」 제11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11. 2. ~ 11. 16. (15일간)
4. 공시송달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문의처 :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 031-5189-5320)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 내역

연번	분기	차량번호	납부자	부과금액(원)	반송구분	송달주소
1	20262	35모745*	양*희외1인(문*주)*공채면제	15,230	반송함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
2	20262	70소810*	이*열	28,250	반송함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

화성시 동탄구 제2026-513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및 본부과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1.02. ~ 2026.11.16.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사전통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11.02. ~ 2026.11.16.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본부과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납부하고자 하는 공고대상자는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환경관리팀에서 납부기한 및 고지서(가상계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동탄구 도시환경과(☎ 031-5189-5320)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화성시 고시 제2026 - 8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화성 봉담 대로2-10호선(구. 대로2-6호선)]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0호선(구.대로2-6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6. 11. 2.

화 성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가. 위치 : 화성시 봉담읍 상리 274-8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화성봉담2 대로2-10호선(구. 대로2-6호선) 개설공사

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2	10	30	보조간선도로	3,532	대로1-8	대로1-1	일반도로	-	화성시고시 2007-85 (07.03.19)	
시행	대로	2	10	30	보조간선도로	1,006	봉담읍 상리 산23-9	봉담읍 상리 274-8	일반도로	-		

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유서

노선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대로2-10호선 (구. 대로2-6호선)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2007. 8. 10. ~ 2026. 12. 31. - 변경 : 2007. 8. 10. ~ 2027. 12. 31.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등 보상업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대표)	주소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07. 8. 10. ~ 2026. 12. 31. 까지

○ 변경 : 2007. 8. 10. ~ 2027. 12. 31. 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성명	주소	
1	280-10	도	75	75	공	화성시	
2	280-7	도	114	114	공	화성시	
3	274-2	전	1,182	1,182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4	280-5	임	758	758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5	279-1	전	2,562	2,562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6	280-6	전	416	416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7	477-29	도	156	156	국	국토교통부	
8	282	전	1,415	1,415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9	산19-12	임	13,284	13,284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0	444-4	전	1,708	1,708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1	산19-17	임	1,063	1,063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2	산19-18	임	2,381	2,381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3	산120-1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14	36-26	대	3,661	3,661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5	산24-1	임	5,456	5,456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6	36-11	임	82	82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7	산25-8	임	1,232	1,232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8	36-21	임	3,459	3,459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9	477-32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20	34-56	도	10.0	10	국	국토교통부	
21	477-31	도	81	81	국	국토교통부	
22	34-45	전	15	15	국	국토교통부	
23	34-58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24	34-60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25	274-6	도	2	2	공	화성시	
26	280-8	임	2	2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성명	주소	
27	274-8	전	536	536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28	274-5	전	338	338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29	526-1	답	446	446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0	274-7	전	4	4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1	600-3	도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600-5	도	77	77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601-18	구	58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529-2	답	1	1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5	528-3	답	159	159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6	527-2	답	157	157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7	528-2	답	292	292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8	527-1	답	1,518	1,518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9	601-13	구	1,117	1,021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538-4	답	771	771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41	281	전	919	919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42	538-5	철	87	87	국	국토교통부	
43	281-1	철	43	43	국		
44	282-3	철	135	135	국		
45	282-6	철	190	190	국		
46	282-4	철	79	79	국		
47	산19-14	철	68	68	국	국토교통부	
48	601-15	구	29	29	국		
49	산19-15	철	105	105	국	국토교통부	
50	산19-16	철	293	293	국	국토교통부	
51	445-3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52	445-2	전	1,086	1,086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53	495-2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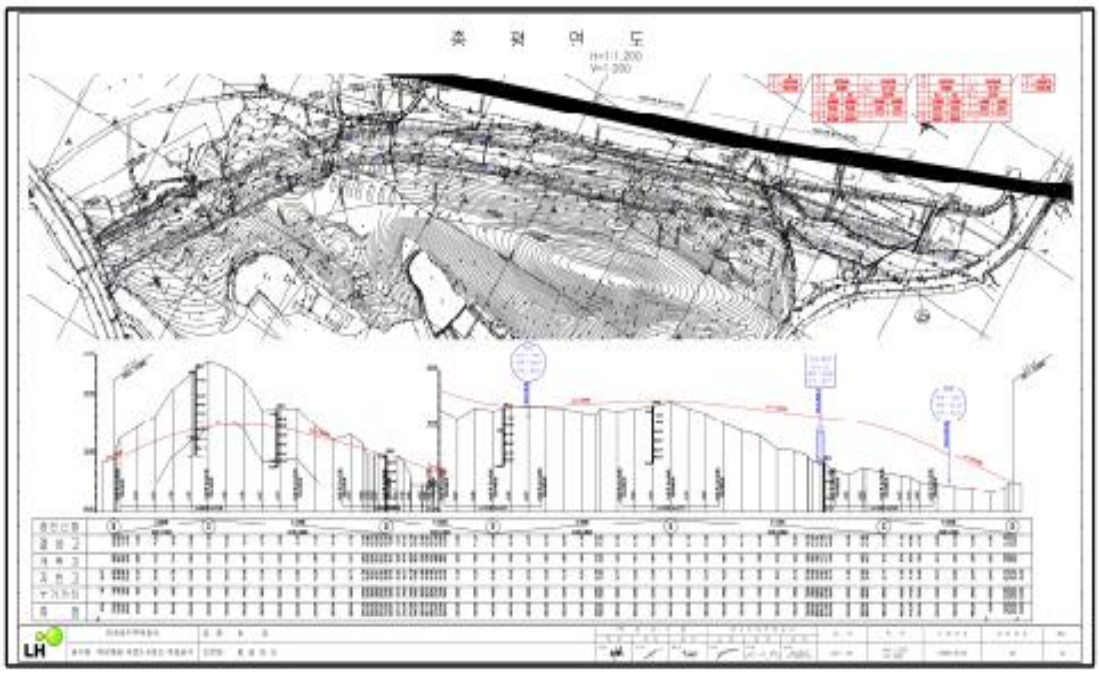
일련번호	지번	변경			소유자		변경사유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54	456-13	대	303	303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55	456-4	전	311	311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56	456-12	대	539	539	한******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57	717-1	도	2466.7	2466.7	공	화성시	
58	산23-9	도	39	39	국	국토교통부	
59	산23-10	임	13	13	국	국토교통부	
	합 계		51,677.7	51,5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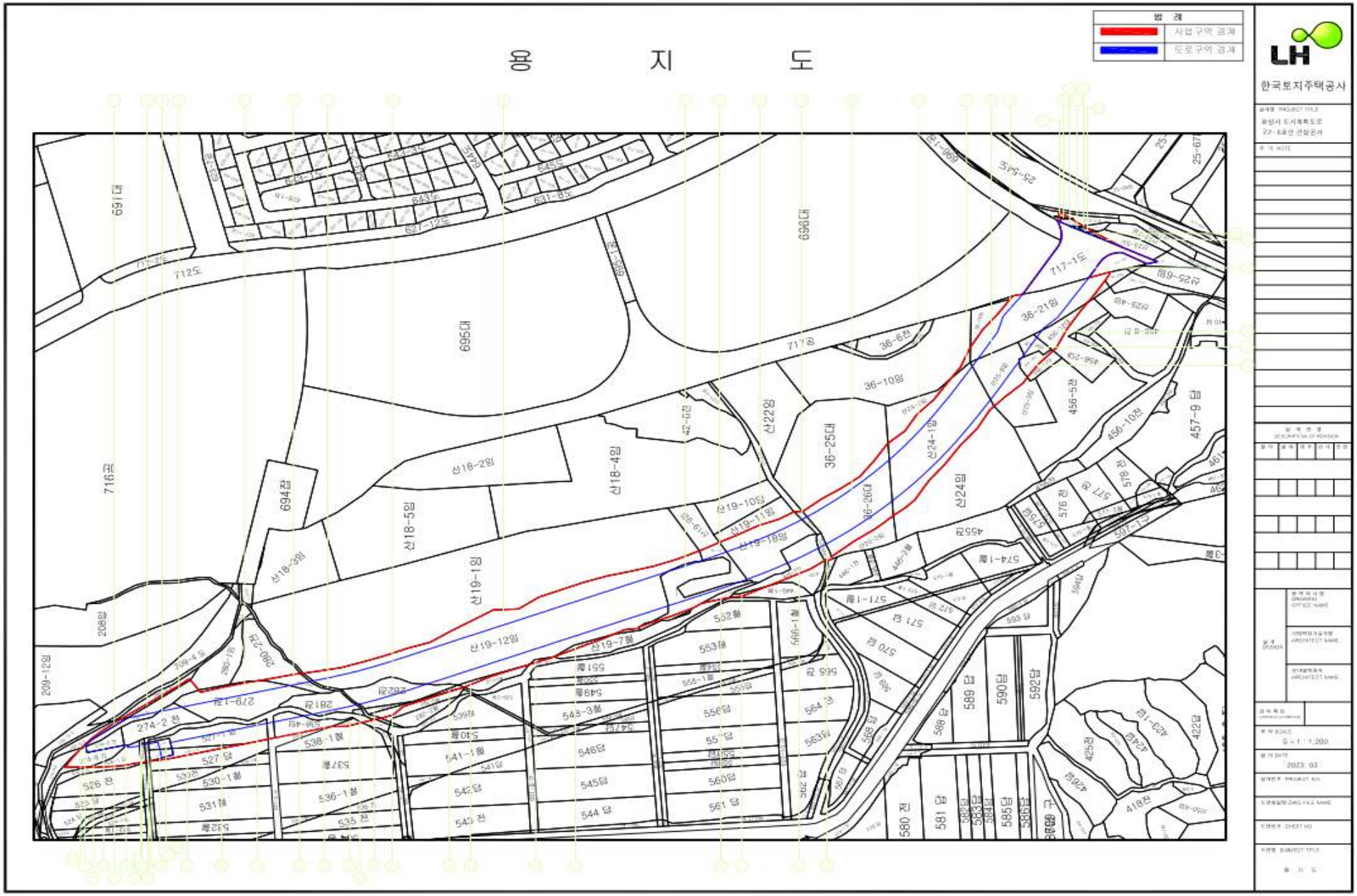
1 위 치 도


Maesong-myeon
수 원 시
화성어천지구
봉담3지구
봉담2지구
동탄2지구
동탄1지구
대로2-10호선
화 성 시
Bongdam-eup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IC 천천
IC 봉담
IC 남봉담
JC 화성
IC 청남
본 과 업 구 간
① 대로2-10호선(구. 대로2-6호선)
B=30~63m, L=1,006m

6 계획평면도(변경없음)

가. 공사계획평면도




용 지 도
범 례
사업구역 경계
도로구역 경계
한국토지주택공사
691대
712도
695대
696대
717-1도
717종
694잡
716묘
산18-2임
산18-4임
산18-5임
산19-1임
산19-12임
산22임
산24임
36-25대
36-21임
36-10임
36-6전
457-9 답
589 답
590답
592답
580 전
581 답
585답
544 답
545답
546답
560답
561 답
543 전
542답
541-1 답
527 답
526 전
531 답
532 답
535 전
536-1 답
537 답
538-1 답
532 답
553 답
556-1 답
556답
555 답
564 답
563답
565 답
571 답
570 답
574-1 답
455답
576 전
578 전
456-10전
456-5전
420-1답
422답
425전
426답
418답
1:1,200
2023. 03

화성시 고시 제2026-8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화성봉담2 국도43호선 우회도로(대로2-10, 3-18호선)]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26. 11. 2.

화 성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가. 위치 :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0호선 및 대로3-18호선)

○ 명칭 : 화성봉담2 국도43호선 우회도로(대로2-10, 3-18호선) 개설공사

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조서

() : 봉담지구 내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2	10	30	보조간선도로	3,532 (1,129)	대로1-8호선 (상리 산23-5)	대로1-1호선 (천천리 101-7)	일반도로	-	화성시고시 제2007-85호 (07.03.19)	
시행	대로	2	10	30	보조간선도로	1,455	상리 527-1	천천리 101-7	일반도로	-		
결정	대로	3	18	25	집산도로	2,071 (1,955)	대로2-6호선 (상리 209-2)	중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08-794호 (08.12.26)	
시행	대로	3	18	25	집산도로	116	상리 209-14	상리 194-14	일반도로	-		

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유서

시설종류	변경사항	주소
대로2-10호선 대로3-18호선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2015. 7. 1. ~ 2026. 12. 31. - 변경 : 2015. 7. 1. ~ 2027. 12. 31.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등 보상업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법인명(대표)	주소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5. 7. 1. ~ 2026. 12. 31.까지

○ 변경 : 2015. 7. 1. ~ 2027. 12. 31.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031-5189-24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1. (대로2-10호선 / 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련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1	당초	67-6	전	1638	1638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2	당초	67-7	천	378	378	공	경기도	
3	당초	67-8	천	94	94	공	경기도	
4	당초	67-9	천	181	181	공	경기도	
5	당초	66-7	임	551	55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6	당초	486-14	철	241	241	국	국토교통부	
7	당초	486-16	철	834	834	국	국토교통부	
8	당초	67-5	답	153	153	공	경기도	
9	당초	477-39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10	당초	65-3	임	399	399	국	기획재정부	
11	당초	65-2	임	11	11	국	기획재정부	
12	당초	66-6	대	1,102	1,102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3	당초	527-2	답	157	157	한******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14	당초	528-3	답	159	159	한******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15	당초	601-18	구	58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당초	601-17	구	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당초	600-5	도	77	7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당초	600-4	도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당초	526-1	답	446	446	한******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20	당초	526-2	답	353	353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21	당초	274-1	전	175	175	한******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22	당초	525-3	답	6	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23	당초	524-4	답	7	7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24	당초	599-1	구	108	108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당초	598-3	도	67	67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당초	272-2	전	59	59	공	화성시	
27	당초	271-6	답	39	39	공	화성시	
28	당초	271-8	도	719	719	공	화성시	
29	당초	213-23	철	6	6	국	국토교통부	
30	당초	213-22	도	20	20	공	화성시	
31	당초	271-5	답	145	145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32	당초	209-15	임	17,094	17,09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33	당초	213-19	답	29	2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34	당초	213-20	답	31	3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35	당초	212-1	답	136	13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일련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36	당초	211	전	665	665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37	당초	209-7	임	8,068	8,068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38	당초	178-5	전	190	19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39	당초	178-4	전	849	84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40	당초	178-6	전	3	3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41	당초	274-7	전	4	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42	당초	280-8	임	2	2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43	당초	280-10	도	75	75	공	화성시	
44	당초	274-8	전	536	536	한*******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45	당초	274-6	도	2	2	공	화성시	
46	당초	280-9	도	289	289	공	화성시	
47	당초	209-19	도	693	693	공	화성시	
48	당초	274-4	도	427	427	공	화성시	
49	당초	477-68	도	279	279	국	국토교통부	
50	당초	272-1	도	633	633	공	화성시	
51	당초	272-3	전	1,868	1,868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52	당초	210	전	2,588	2,588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53	당초	209-13	대	581	58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54	당초	179-1	전	1,041	1,04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55	당초	477-56	도	699	699	국	국토교통부	
56	당초	209-10	임	24	2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57	당초	477-58	도	4	4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련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58	당초	669-3	천	420	420	국	국토교통부	
59	당초	669-4	천	117	117	국	국토교통부	
60	당초	669-6	천	223	223	국	국토교통부	
61	당초	470-5	전	620	62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62	당초	472-6	철	212	212	국	국토교통부	
63	당초	477-17	철	933	933	국	국토교통부	
64	당초	464-3	답	1,019	1,01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65	당초	463-2	전	1,910	1,91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66	당초	463	대	604	60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67	당초	654-123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68	당초	654-134	도	68	68	국	국토교통부	
69	당초	471-5	전	57	57	국	기획재정부	
70	당초	471-6	전	19	19	국	기획재정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련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71	당초	471-4	전	52	52	국	기획재정부	
72	당초	471-3	전	226	226	국	기획재정부	
73	당초	472-7	답	529	52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74	당초	473-4	전	1,107	1,107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75	당초	654-125	도	74	74	국	국토교통부	
76	당초	475-19	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77	당초	475-18	전	179	179	국	국토교통부	
78	당초	462-4	답	1,964	1,96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79	당초	461-4	답	147	147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80	당초	458-3	답	153	153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81	당초	457-3	전	359	35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82	당초	456-3	전	224	22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83	당초	455-3	답	183	183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84	당초	470-6	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85	당초	472-5	답	389	389	국	국토교통부	
86	당초	473-5	전	985	985	국	국토교통부	
87	당초	472-8	철	30	30	국	국토교통부	
88	당초	477-19	철	61	61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일련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89	당초	287-1	전	226	22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0	당초	286-2	전	1,799	1,79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1	당초	288-1	답	756	75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2	당초	285-4	목	1751	175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3	당초	282-1	전	2,307	2,307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4	당초	269-6	답	424	42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5	당초	268-1	답	214	21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6	당초	267-1	답	876	87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7	당초	260-1	답	909	90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8	당초	261	답	569	56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99	당초	262-1	답	1,686	1,68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0	당초	252-4	답	1,260	1,26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1	당초	252-3	답	760	76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2	당초	251-1	답	550	55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3	당초	245-1	답	380	38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4	당초	244-1	답	148	148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5	당초	246-4	전	1,346	1,34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6	당초	451-5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일련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107	당초	103-18	전	24	2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8	당초	232-14	도	208	208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9	당초	232-15	전	16	1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10	당초	232-16	목	407	407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11	당초	438-21	천	691	691	국	국토교통부	
112	당초	438-40	천	84	84	국	국토교통부	
113	당초	438-23	천	219	219	국	국토교통부	
114	당초	103-16	대	140	14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15	당초	103-15	대	124	12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16	당초	103-17	목	288	288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17	당초	285-6	전	51	5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18	당초	286-4	목	153	153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19	당초	280-1	답	234	23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0	당초	276-1	답	1,194	1,194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1	당초	269-7	답	1,413	1,413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2	당초	274-1	전	1,285	1,285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3	당초	269-5	답	232	232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4	당초	270-1	답	290	29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5	당초	257-1	답	82	82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6	당초	258-1	답	562	562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7	당초	254-1	답	615	615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8	당초	253-1	답	772	772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29	당초	250-1	답	1,050	1,050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30	당초	246-7	목	63	63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31	당초	246-6	답	1,015	1,015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32	당초	444-21	도	203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3	당초	232-5	대	375	375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34	당초	437-5	도	11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당초	436-9	구	53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6	당초	101-12	잡	1,296	1,29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37	당초	101-13	전	21	2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38	당초	100-29	전	48	48	공	경기도	
139	당초	97-2	대	62	62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40	당초	97-5	대	31	31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41	당초	97-6	대	19	19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42	당초	100-31	대	25	25	국	국토교통부	
143	당초	100-50	대	54	54	국	국토교통부	
144	당초	96-15	대	121	121	공	경기도	
소 계				87,970	87,970			

2. (대로3-18호선 / 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련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변경사유
						성 명	주 소	
107	당초	209-14	임	4,165	4,165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8	당초	194-14	임	1,927	1,927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109	당초	194-15	임	426	426	한******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	
소 계				6,518	6,518			

화성시 고시 제2026 - 85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1. 2.

화 성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사창리 733-12, 733-20 외 24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만년로 212-2 외 1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변경전)	도로명주소(변경후)	효력발생일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장지동 737-1 외 7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5189-1646)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s://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지번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사창리 733-12, 733-2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안요골길82번길 56-11	20261102	20221202	안요골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송곡리 238-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송곡웃말길 20-16	20261102	20080204	행정구역명(송곡리)과 옛지명을 합성하여 송곡웃말길로 도로명 부여
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매향리 97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궁평항로 400	20261102	20091027	도로구간 인근의 항구명칭을 이용하여 궁평항로로 도로명 부여
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송산리 789-12, 789-16, 806-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정문길 103-9	20261102	20080204	행정구역명(정문리)을 이용하여 정문길로 도로명 부여
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용소리 725-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용소금각로 145-10	20261102	20090824	화성시 용소리부터 평택시 금각리까지 가는 경기도 광역도로
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정문리 273-4, 274-4, 274-9, 송산리 789-1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정문길 103-5	20261102	20080204	행정구역명(정문리)을 이용하여 정문길로 도로명 부여
7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장지동 943-11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장지천2길 5 (장지동)	20261102	20191104	행정구역명을 활용하고 인근 장지천의 고유지명을 이용
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54-1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장안로 491	20261102	20091117	우정읍-장안면-향남읍을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중간지역의 행정구역명칭을 이용하여 장안로로 도로명 부여
9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수촌리 68-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꽃밭길 8-1	20261102	20080204	예전부터 불리어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10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계향리 578-16, 578-23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내향안길 96-4	20261102	20101126	계향리와 귀래리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 부여
11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장지동 737-1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전나무골길 45-9 (장지동)	20261102	20091027	옛지명을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조암리 340-36, 340-6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조암서로 8	20261102	20091027	행정구역명(조암리)와 방위를 이용하여 조암서로로 도로명 부여
1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온석리 399-1, 399-10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신현대로 404	20261102	20211015	새로운 의미의 '신'과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현대'를 인용함
14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원평리 536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봉로123번길 5-5	20261102	20110816	매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고정리 97-13, 108-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공룡로488번길 36-17	20261102	20091117	공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장지동 1136-2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소라1안길 27-6 (장지동)	20261102	20231127	행정구역명(동탄) 및 고유지명(소라리)인용
17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구장리 949-6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약수터길 127-11	20261102	20091027	고유지명을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1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신천리 507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천등길 203	20261102	20091027	행정구역명(천등리)을 이용하여 천등길로 도로명 부여
19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869, 871-9, 871-10, 871-11, 872-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제약단지로 90-12	20261102	20080204	향남제약공단 내 도로라 하여 도로명 부여
2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871-4, 869-3, 871-2, 871-3, 87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안길동길 131	20261102	20080204	예전부터 불리어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2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장덕리 44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장덕북길82번길 42	20261102	20091027	장덕북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원천리 227-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원천길 8-6	20261102	20091117	행정구역명(원천동)을 이용하여 원천길로 도로명 부여
2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활초리 44-9, 44-1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홍난파길87번길 31-37	20261102	20091027	홍난파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활초리 44-6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홍난파길87번길 31-35	20261102	20091027	홍난파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동오리 53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363	20261102	20081219	도로구간 인근의 대표기업명칭(삼성전자)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